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3. 17.(목)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2년 3월 8일
-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심의위원회의 통합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설치 근거 조항 변경(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제159조
- 기금의 조성 각 호 중 3호(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을 삭제(안 제5조)
-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용어 변경(안 제8조) 및 일부 조항 삭제(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며,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에 맞춰 예산과 기금에 관련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사항인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제159조” 로, 제8조의 제목 “(회계공무원)” 을 “(회계관계공무원)” 으로 변경함.
- 또한, 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해 제11조에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조항을 신설함.
- 같은 회기 심사되는 제정·개정 조례안에 따라 통합·운영하게 되는 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음.

통합위원회명	통합 운영(심의) 위원회	비 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교육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전부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부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 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